

審 查 報 告 書

1. 審查經過

- 가. 提出日字 : 1998. 11. 9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8. 11. 9
- 라. 上程日字 : 1998. 11. 13

2. 提案說明要指(提案說明: 總務課長 方景泰)

가. 提案理由

-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과 고문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제공무원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회의에 출석한 의원과 우리 시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조례의 제정은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는 것은 물론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됨.
- 조례안 제3조(구성)에서 보면 위원을 위원장포함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중앙정부의 추진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였는데 시 추진위원회에는 이의 설치 필요성은 없는지 등에 관한 설명과 심의가 요망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查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26 호
의결 년 월 일	1998. . . (제 회)

서산시제2의견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제출자	서산시장
제출년월일	1998. 11. 9 .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6
----------	----

제출년월일 : 1998년 11월 9일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안이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과 고문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회의에 출석한 의원과 우리 시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2.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등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총무국장이, 서기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의원과 소속직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